

Demand, Supply and Merchandising of U.S upland Cotton

4. 변칙면화와 그 품등사정

Grade에 있어서 특수한 상태이면서도 Standards에 의거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정상면표로서 사정될 수 있으나 U.S.D.A.의 면화사정규정을 보면 [미국의 공정면화표준과 비교했을 때 그 해당 Grade이하의 협잡물을 함유하고 있든지 불규칙 혹은 하자가 있는 이유 때문에 면화의 Grade가 격하될 경우, 격하된 Grade와 격하되기 전의 Grade 및 그 Grade를 격하하게 만든 조건과 특질이 결정되고 기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정명세서(Classification memorandum)에 의하여 특수상태의 면표와 정상적인 Grade요소를 갖춘 다른 면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1) Bolly Cotton

Bolly면이라 함은 다래(Boll)이 완숙되기 전에 서리를 맞아 그 발육이 정지된 미숙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확시 미개과(未開果) Boll과 개과 Boll을 구별함이 없이 적취하여, 한꺼번에 조면공장에 보내어 boll에서 실면을 분리하는 정면공정을 거친 다음 Lint에서 면실을 분리하는 조면기를 통하여 조면된다.

Bolly면은 보통 착색되었거나 spotted이며 수피(Bork) 각(Burs) 및 내피(Shale)의 소편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2) Rough Preparation

Preparation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면상의 조활도 및 조면중에 발생된 Nep

혹은 Nap의 다과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다.

어떤 견본이 Preparation이 조약하기 때문에 one Grade 혹은 Two Grade가 격하될 경우에는 격하된 Grade와 격하되기 전의 Grade 및 “Prep”의 기호가 조정명세서에 기인된다(Grading의 실제참조)

Roller-Gin으로 조명한 Upland면은 Saw Gin으로 조명한 Upland면을 가지고 작성한 공정 Grade 표준과 외관을 비교할 수 없다.

미 농무성의 방사시험에 의하면 Roller-Gin으로 조명한 면화쪽이 Saw-Gin으로 조명한 것 보다 Nep 및 Nap가 적은 것이 통례이다.

Roller-Gin으로 조명한 Up land면은 Nep 및 Nap의 결정적인 정처없이 Preparation을 이유로해서 Grade가 격하될 수 없다.

(3) Gin-Cut Cotton

Gin-Cut 면이라 함은 조면공정중에 조면기의 톱이 (Saws)로 면섬유가 절단되어 그 Grade가 Two Grade 이상 격하되는 면화를 말한다. Gin Cut면의 견본이 사정될 경우에 격하된 Grade와 격하되기 전의 Grade 및 “Gin-Cut”의 기호가 사정명세서에 기입된다.

(4) Reginned Cotton

조면해서 포장된 뒤에 정면 또는 다른 공정을 거치기 위하여 개표되어 다시 포장되는 면화를 Reginned Cotton이라 칭한다.

정상적인 조면공정으로 실면(Seed Cotton)이 Gin-Condenser 및 Press-Box에 가는 도중의 계속적인 조작중에 Lint cleaner의 경우처럼 Saws를 통과하는 면화는 Reginned Cotton이 아니다.

미국의 각 면화정기거래소(Cotton futures Exchange)의 거래규칙에서는 이

Reginned Cotton을 고의로 정기약정(Futures Contract)에 의한 검품 또는 수도에 공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Reginned cotton의 견본은 다른 견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정되나 “Reginned”의 기호가 사정명세서의 당해 Grade의 앞에 기입하게 된다.

(5) Repacked Cotton

Repacked Cotton은 다음에 열거하는 면화를 칭한다.

(A) Broker(중개상), Factor(고간) 또는 기타 면화 취급상의 견본, 너털 너털한 면화(Loose Cotton)의 lot 또는 상이한 lot의 면화를 굵어 모아서 재포장(Repacked)한 것은 그 포에서 채취한 견본의 품질에 대폭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Repacked Cotton의 사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Repacked”의 기호를 사정명세서의 해당품질의 앞에 붙여야 한다.

또한 Grade 혹은 Staple이 극히 불규칙(Irregularity)한 견본을 일정 Grade 또는 Staple로서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Repacked-No Grade or Staple assigned a/c irregularity”의 기호를 사정명세서에 기입하게 된다.

(6) False Packed Cotton

False Packed Cott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헝잡물 또는 면화를 함유하는 면표를 말한다.

(A) 면화 이외의 이질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B) 표면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간에 내부에 손상면(Damaged Cotton)을 함유하고 있는 것.

(C) 보통 행하여지는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표면은 양질의 면화인데

반하여 내부에는 보다 떨어지는 면화를 함유하고 있는 것.

(D) 수확시 적취하다 남긴 면(Pickings) 또는 Linter를 함유하고 있는 것.

어떤 견본이 false Packed Cotton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견본에 대해서 Grade 또는 Staple은 지정하지 않고 “False-Packed”라는 기호를 사정명세표에 기입한다.

(7) Mixed Packed Cotton

견본을 채취한 면표에서 다음과 같은 Grade 및 Staple의 상위가 발견되는 면표를 Mixed Packed Cotton이라 한다.

(A) Grade가 3등급 또는 그 이상 틀리는 것.

(B) Color가 3등급 또는 그 이상 틀리는 것.

(C) Staple이 1/8" 또는 그 이상 틀리는 것.

Mixed Packed Cotton을 결정하는 목적상 White면(Plus Grade 포함) Light Gray 면 및 Gray면은 하나의 Color Group를 구성하게 되며 Light Spotted면, Spotted 면, Tinged면 및 Yellow Stained면은 각각 별개의 Color Group를 구성한다.

사정인의 어떤 견본의 Grade에 대하여 Mixed Packed Cotton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Mixed Packed”의 기호가 사정명세서의 Grade항에 기입되며 Staple에 대해서는 판정한대로 기입하게 된다.

그 견본이 Staple에 대해서만 Mixed Packed인 경우에는 “Mixed Packed”의 기호가 사정명세서의 Staple항에 기입되며 Grade에 대해서는 판정한대로 기입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혼면의 요소가 되는 두 개의 Grade 또는 두 개의 Staple은 사정명세서의 “Remarks”의 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TABLE 2. Mixed Packed cotton

Official Definition of Mixed Packed Cotton Cotton in a bale which, in the sample taken therefrom, shows (1) a difference of 3 or more grades, or (2) a difference of 3 or more color groups, or (3) a difference in length of staple of $\frac{1}{8}$ inch or more.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White Cotton (including the Plus grades), Light Gray Cotton, and Gray Cotton shall constitute one color group, and Light Spotted Cotton, Spotted Cotton, Tinged Cotton, and Yellow Stained Cotton shall each constitute a color group.

GRADES	COLOR GROUPS							
	1				2	3	4	5
	White	Plus	Light Gray	Gray	Light Spotted	Spotted	Tinged	Yellow Stained
1	GM				GM Lt Sp	GM Sp	GM Tg	CM YS
2	SM	M+			SM Lt Sp	SM Sp	SM Tg	SM YS
3	M	SLM+	GM Lt G		M Lt Sp	M Sp	M Tg	M YS
4	SLM	LM+	SM Lt G	GM G	SLM Lt Sp	SLM Sp	SLM Tg	Below M Ys
5	LM	SGO+	M Lt G	SM G	LM Lt Sp	LM Sp	LM Tg	
6	SGO	GO+	SLM Lt G	M G	Below LM Lt Sp	Below LM Sp	Below LM Tg	
7	GO			SLM G				
8	Below GO			Below SLM G				

HOW TO APPLY CHART—COTTON IS MIXED PACKED WHEN THERE IS A DIFFERENCE OF (1) 3 OR MORE GRADES UP OR DOWN THE CHART, OR (2) 3 OR MORE COLOR GROUPS ACROSS THE CHART

EXPLANATION OF CHART

1. Each color group is separated by heavy lines. White, Plus, Light Gray and Gray are all in one color group.
2. For simplification, only the color of the Plus, Light Gray, and Gray grades as defined in the official standards are considered. Examples: (1) The color of Middling Plus is Strict Middling—therefore Middling Plus is listed on the chart opposite Strict Middling. (2) The color of Strict Middling Gray is Low Middling—therefore Strict Middling Gray is listed on the chart opposite Low Middling.

(8) Plated Bales

Plated Bales라고 하는 것은 면표의 한쪽, 때로는 양쪽의 외면에 전혀 다른 품질의 면화의 층이 포개있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Plates는 서로 다른 품질의 면화가(동일 Gin Box로) 연속적으로 조면될 때의 조면공정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태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해서 먼저 조면한 면표의 이질면화의 얇은 층이 극소량 잔존해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보통 외측의 얇은 층이 면표의 한 쪽에서 절취한 견본(a cut sample)의 1/4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얇은 층은 Grade 및 Staple에 대한 사정시 무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반적 규칙은 기후 혹은 기타의 손상(Damage)을 입은 면표의 견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정인은 보다 좋은 혹은 보다 떨어지는 면화의 얇은 층을 가지고 있는 각견본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야 한다.

(9) Water-Packed Cotton

Water Packed Cotton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침투된 수기에 의해서 내부의 면화가 손상된 면표를 말한다.

(A) 포장공정중에 물이 침투된 결과 내부의 면섬유가 손상된 면표

(B) 외관은 건조되어 있으나 내부의 면화가 외기 및 기타의 영향을 받아서 수기에 의한 손상을 입은 면표

어떤 견본이 Fire-damaged Cotton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Grade 및 Staple을 지정하지 않고 “Fire-Damaged”의 기호를 사정명세서에 기입한다.

어떤 면화가 외관으로 봐서는 Fire-Damaged인 것이 분명하나 손상을 입게 된 원인이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Grade 및 Staple을 지정하여야 하며 Fire-Damaged가 보이는 지의 “Has Appearance of fine-damage”의 기호를 병기한다.

또한 어떤 견본이 Fire-Damaged라고는 인정될 수 없으나 그 견본이 Fire-Damage를 입은 후에 손질한 면표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Grade 및 Staple을 지정하고서 Fire-Damaged후 재포장 되었다는 지의 “Reconditioned after fire damaged”의 기호를 사정명세서에 기입한다.

(11) Extraneous Matter

Extraneous Matter(협잡물)라 함은 면화견본중에 함유되고 있는 이질물로서 견본면화의 품질이 공정 Grade표준에 대등한 것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잡물로서는 초, 수피, 모래, 먼지, 기름, 면실 또는 면실의 소편, 수경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잡물이 눈에 띄게 함유되고 있는 면화견본은 One Grade 혹은

그 이상 격하하여 Grade 인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어떤 면화가 헝잡물이 보이기 때문에 격하하여야 할 경우에는 격하된 Grade, 격하되기 전의 Grade, 및 격하를 위한 명확한 이유가 사정명세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어떤 견본중에 있는 초, 경, 면실, 수피, Mote등은 정상적인 사정요령에 따라서 견본의 이질적인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견본 가운데 있는 모래는 그 견본을 한장의 백지위에서 조용히 흔들면 떨어지므로 쉽게 발견될 수 있으나 먼지(Dust)는 그것처럼 간단하게 발견될 수 없다. 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면화는 부자연스런 Dull color을 나타낸다. 먼지의 유무를 확인코자 할 때는 견본을 쪼갠(Opening)뒤 그 쪼개진 두개의 견본에 공기가 통하도록 눌러서 합치면 내부의 먼지가 공기의 힘으로 밀려나와 주위의 공기중에서 눈에 보인다.

Oil-stained Cotton은 기름이 침투된 면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그 외관, 촉감 또는 냄새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2) Below Grade Cotton

공정면화표중의 소정 Color group의 최하급 Grade 보다 낮은 Grade의 면화를 Below Grade Upland Cotton이라고 한다.

이러한 면화의 견본이 사정되는 경우에는 사정명세서의 Grade란에 “Below grade”라고 기입되며 “Remarks”란에는 다음의 어느 사항이 기입된다.

Below Good Ordinary

Below Low Middling Light Spotted

Below Low Middling Tinged

Below Middling Yellow Stained

Below Strict Low Middling Gray

면화가 다량의 초, 수피 및 기타의 험잡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소정의 Color Group의 One Grade 이상 격하되었을 경우에는 사정명세서에 “Excessive Grass” 또는 “Excessive Bark” 등의 설명이 추가된다.

미국정부의 면화등급사정업무

미국정부에 의하여 사정되는 면화는 전부 미합중국 공정면화표준(United States Official Cotton Standards)에 의거 Grade 및 Staple별로 분류되며 이 사정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무과사정(Smith-Doxey Act에 의거한 품등사정)

면화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Group를 형성하고 있는 농가 및 소정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농가는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면화의 품등사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품등사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견본은 자동견본채취장치(An Automatic sampler)로 채취한 봉인이 있는 견본이든가 또는 견본채취업자(An Adopted Sampler) 및 양도가능창하정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인창고업자(Public Warehouse)에 의하여 면표의 양측으로부터 채취된 것이라야만 한다. 각 견본의 공정 Grade 및 Staple을 표시한 면화품등사정명세서 Form 1(A Cotton classification Memorandum Form 1)은 당해 면화의 조면된 지구의 품등사정사무소(Classing Office)가 발급하게 된다. 사정이 끝난 후의 견본은 정부의 소유가 된다. 품등사정 Card 또는 명세서는 농가가 면화를 매각할 때 혹은 상품금융회사(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융자를 받을 때에 사용된다.

2. 보통의 유료사정(U.S.Cotton Standard Act에 의거한 품등사정)

미합중국 면화표준법에는 면화의 보관책임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농무장관의 규정한 바에 따라 채취한 면화견본을 품등조정키 위하여 농무성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무장관의 규칙에는 본 표준법에 의거한 하기의 품등사정을 규정하고 있다.

(1) Form A에 의한 품등사정

이것은 당해면화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으로 공인창고로부터 직접 품등사정사무소에 제출된 새로이 채취한 견본의 사정 또는 대조이며 동사정 또는 대조는 Form A Memorandum으로 입증된다. 재험을 받을 수 있다.

(2) Form B에 의한 품등사정

분쟁당사자 2명 이상의 합의로 제출되는 견본의 사정 또는 대조이며 동사정 또는 대조는 Form b Certificate로 입증된다. 재험을 받을 수 있다.

(3) Form C에 의한 품등사정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면화부의 직원관리하에 검사되고 견본채취된 면화의 사정 또는 대조이며 이 견본의 사정 및 대조는 Form C 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4) Form D에 의한 품등사정

당해 면화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견본의 사정 또는 대조이며 Form D memorandum으로 입증된다. 재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 품등사정수수료(Classing Fee)는 Grade 및 Staple의 판정에 대하여 일견본당 35선이다.(1962년 12월 1일 개정 발효됨)

3. 정기공용면화의 사정(면화정기거래규정 Cotton Futures legislation에 의한 품등사정)

1954년 국내세입법의 면화정기거래규정(Cotton Futures Provis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에서는 약정면화의 수도(Tender) 및 결제(Settlement)는 농무성의 면화품등사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수도공용증명(Futures Cerification)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견본은 공인창고로부터 직접 품등사정사무소에 질부되어야 한다. 견본채취 및 사정신청서의 제출은 면화정기거래소에 합동면화검품국(Joint Cotton Inspection Bureau of the Cotton futures Exchanges)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정결과는 Memorandum Form으로 발급되며 품등사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각 면표의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에는 Stamp된다. 이 정기수도면화(Tender on Futures)의 품등사정은 Galveston, Houston, New Orleans, Charleston의 사정사무소에서 행한다.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으면 당해 사정은 재험공소위원회(The appeal Board of Review Examiners)의 재험에 회부하게 된다.

정기공용을 위한 사정료(Cotton Futures Classification Fee)는 일견본당 35선이며 재험 및 Micronaire 판정을 포함하는 사정료는 일견본당 70선이다(1962년 12월 1일 개정 발효됨)

4. C.C.C. 용자를 받기 위한 유료사정

상품금융공사(C.C.C.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용자를 받기 위한 품등사정은 Smith Doxey Act에 의거, 면화개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또는 동법에 의한 품등사정업무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 시설을 용자면화의 보관에 사용하는데 대한 C.C.C.의 인하를 받은 창고업자, 그리고 면작지역의 농업안전보전국(A.S.C.S.)의 주 및 군위원회는 사정을 받기 위한 견본 제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용자 면화는 공인창고에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용

자를 받기 전에 B/L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농가는 소유면화의 견본채취에 대하여 창고업자, A.S.C.S.(Agricultural Stervilization & Conservation Serice) 군위원회 또는 수취대행기관과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품등사정사무소는 사정료를 창고업자, A.S.C.S.군위원회 및 수취대행기관에 청구하게 되어있다. 사정수수료는 일견본당 25선이며 사정이 끝난 후의 견본은 C.C.C.의 소유가 된다.

C.C.C. 용자를 받은 면화는 Grade 및 Staple에 대한 사정이외에 용자계획규칙의 각 년도 보충규정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Micro 섬도를 Grade 및 Staple과 함께 사정기준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